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0회 임시회(2019. 5. 14.)

2019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 운영 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2019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58
----------	-------

2019. 5. 14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19. 5. 1.
- 다. 회 부 일 : 2019. 5. 3.

2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가. 세 입

- 해당 없음.

나. 세 출

-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,640만원 증가한 39억 2,148만 2천원 임.

(단위:천원)

분야·부문·정책사업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3,921,482	3,805,082	116,400	3.06%
정책사업	1,628,704	1,512,304	116,400	7.70%
재무활동	0	0	0	0.00%
행정운영경비	2,292,778	2,292,778	0	0.00%

다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성질별 증감 현황

(단위:천원)

정책·단위(회계)·세부사업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선진의회상 정립	1,628,704	1,512,304	116,400
의정활동 지원	1,616,704	1,500,304	116,400
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	1,554,719	1,438,319	116,400
자산취득비	130,400	14,000	116,400

라.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·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자산및물품취득비	126,400	10,000	116,400
1)카메라구입	10,000	10,000	0
1)사무용 행정 전산장비 구매	116,400	0	116,400
2)컴퓨터	8,400	0	8,400
2)디스플레이 장치(LED 98inch)	52,000	0	52,000
2)디스플레이 장치(LED 86inch)	28,000	0	28,000
2)노트북	27,000	0	27,000
2)조달수수료	1,000	0	1,000

3. 검토결과

가. 예산규모

-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2,870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1,230만 4천원 대비 7.69%에 해당하는 1억 1,640만원이 증가하였음.
-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차원에서 1억 1,640만원이 전액 편성되었음.

나.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

-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액은 의정활동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회의 진행 보조용 LED 디스플레이 설비 개선사업으로 8,000만원, 의정활동 보조 노트북 구매 2,700만원, 직원 노후 컴퓨터 교체 8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.

4. 검토의견

-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,
-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된 장비 개선과 점점 복잡하고 세밀해진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전산 장비 보완 차원의 편성으로 향후 선진의회상 정립에 보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교체는 단순 장비 교체 방법의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스템의 광폭적인 정비를 위하여 회의에 유·무선 통신망을 연결하고 센서 등을 발생하는 등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주고받는 환경 즉 사물인터넷(IOT : Internet of Things) 등을 도입하여 좀 더 진보된 의정활동 서비스를 위한 정보 통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제품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호환성이 가능한 제품을 고려해야 할 것임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 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「지방재정법」

제 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